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7. 8 선고 2021나71078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3. 2. 23 선고 2022다266669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7. 8 선고 2021나71078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명

담당변호사 노승익

피고, 항소인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승

변론종결 2022. 6. 10.

판결선고 2022. 7. 8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0. 27. 선고 2018가소258618 판결

주문

1.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2,429,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12. 14.부터 2022.

7. 8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피고 B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한다.
3.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2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C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원고에게, 피고 B은 2,869,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12. 14.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, 피고 C은 693,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11. 16.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(차량번호 1 생략) 차량(이하 '원고 차량'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. 피고 B은 (차량번호 2 생략) 차량(이하 '피고 차량'이라고 한다)의 운전자이고, 피고 C은 그 동승자이다.

나. 원고 차량이 2018. 8. 17. 11:3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주행하다가 서울시설공단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던 중, 1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고 차량의 앞 범퍼 오른쪽과 원고 차량의 뒤 범퍼 왼쪽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사고'라고

한다).

다. 피고 B은 2018. 8. 17.부터 2018. 12. 6.까지 [별지1] 기재와 같이 87회의 치료를, 피고 C은 2018. 8. 17.부터 2018. 11. 12.까지 [별지2] 기재와 같이 31회의 치료를 받았다. 원고는 피고 B의 치료비로 2,869,730원을, 피고 C의 치료비로 693,600원을 지급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7호증,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영상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접촉 사고에 불과하고,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.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치료비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1) 앞서 든 증거들, 제1심법원의 E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각 범퍼에 접촉 흔적만 남아 있을 뿐 범퍼가 파손되지는 않은 사실,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디모 프로그램 감정결과에 의하면 각 차량에 전달된 충격력이 경미하여 탑승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추정되는 사실,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요추 척추관 협착증으로 보존적 치료와 마약성 진통제 처방을 받고 있었고,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염좌, 경추 염좌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위 인정사실에 요추 염좌, 경추 염좌의 통상 치료기간은 2주에서 3주이고, 그 외 피고 B의 치료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존 질환에 대한 치료로 보아야 한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,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B의 적정 치료기간은 2018. 8. 31.까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.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,429,740원[=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2,869,730원 - 적정 치료비 439,990원(2018. 8. 17.부터 2018. 8. 31.까지의 치료비, 별지 1 참조)]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. 12. 14.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. 7. 8.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

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) 피고 C이 이 사건 사고로 다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치료비 693,6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B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, 피고 B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, 제1심판결의 피고 C에 대한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나, 피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판결을 피고 C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,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석준협, 판사 권양희, 판사 주채광

[별지1]

치료병원	입원기간(일)	통원기간(일)	지급(결정)보험금(원)
		2018.08.17 ~ 2018.08.17 0 일	18,890
		2018.08.28 ~ 2018.08.28 0 일	41,050
		2018.09.04 ~ 2018.09.04 0 일	74,500
		2018.08.21 ~ 2018.08.27 6 일	112,560
		2018.09.29 ~ 2018.08.31 4 일	173,530
		2018.10.04 ~ 2018.10.04 1 일	18,720
		2018.10.08 ~ 2018.10.08 1 일	31,780
		2018.10.10 ~ 2018.10.10 1 일	22,170
		2018.10.11 ~ 2018.10.11 1 일	22,170
		2018.10.12 ~ 2018.10.12 1 일	22,170
		2018.10.02 ~ 2018.10.02 1 일	106,000
		2018.10.13 ~ 2018.10.13 1 일	22,170
		2018.10.15 ~ 2018.10.15 1 일	22,170
		2018.10.14 ~ 2018.10.14 1 일	22,110
		2018.10.16 ~ 2018.10.16 1 일	22,170
		2018.10.17 ~ 2018.10.17 1 일	22,050
		2018.08.17 ~ 2018.08.20 3 일	93,960
		2018.10.18 ~ 2018.10.18 1 일	21,800
		2018.10.19 ~ 2018.10.19 1 일	21,800
		2018.10.21 ~ 2018.10.21 1 일	21,110
		2018.10.22 ~ 2018.10.22 1 일	22,050
		2018.10.24 ~ 2018.10.24 1 일	22,170
		2018.10.26 ~ 2018.10.26 1 일	304,310
		2018.10.26 ~ 2018.10.26 0 일	22,170
		2018.10.25 ~ 2018.10.25 1 일	22,050
		2018.10.27 ~ 2018.10.28 2 일	42,220
		2018.10.29 ~ 2018.10.29 1 일	22,170
		2018.10.30 ~ 2018.10.30 1 일	22,170
		2018.09.03 ~ 2018.09.28 17 일	343,170

	2018. 11. 08 ~ 2018. 11. 08	1 일	22,170
	2018. 11. 09 ~ 2018. 11. 09	1 일	20,500
	2018. 11. 07 ~ 2018. 11. 07	1 일	7,400
	2018. 11. 06 ~ 2018. 11. 06	1 일	18,720
	2018. 11. 10 ~ 2018. 11. 10	1 일	18,500
	2018. 11. 11 ~ 2018. 11. 11	1 일	21,110
	2018. 11. 12 ~ 2018. 11. 12	1 일	13,200
	2018. 11. 12 ~ 2018. 11. 12	0 일	5,600
	2018. 11. 03 ~ 2018. 11. 03	1 일	22,170
	2018. 11. 13 ~ 2018. 11. 13	1 일	18,500
	2018. 11. 14 ~ 2018. 11. 14	1 일	16,400
	2018. 11. 16 ~ 2018. 11. 16	1 일	18,500
	2018. 11. 15 ~ 2018. 11. 15	1 일	16,400
	2018. 11. 17 ~ 2018. 11. 17	1 일	16,400
	2018. 11. 19 ~ 2018. 11. 19	1 일	16,400
	2018. 11. 18 ~ 2018. 11. 18	1 일	21,110
	2018. 11. 20 ~ 2018. 11. 20	1 일	16,400
	2018. 11. 21 ~ 2018. 11. 21	1 일	16,400
	2018. 11. 22 ~ 2018. 11. 22	1 일	16,400
	2018. 11. 24 ~ 2018. 11. 26	2 일	34,900
	2018. 11. 27 ~ 2018. 11. 27	1 일	37,180
	2018. 11. 28 ~ 2018. 11. 28	1 일	22,170
	2018. 11. 29 ~ 2018. 11. 29	1 일	9,630
	2018. 11. 30 ~ 2018. 11. 30	1 일	22,170
	2018. 12. 01 ~ 2018. 12. 01	1 일	22,470
	2018. 12. 02 ~ 2018. 12. 02	1 일	21,110
	2018. 12. 03 ~ 2018. 12. 03	1 일	22,170
	2018. 12. 04 ~ 2018. 12. 04	1 일	22,050
	2018. 12. 06 ~ 2018. 12. 06	1 일	18,720
	2018. 12. 05 ~ 2018. 12. 05	1 일	22,170
	2018. 11. 23 ~ 2018. 11. 23	1 일	426,400
	2018. 10. 01 ~ 2018. 10. 01	1 일	17,200

[별지2]

치료병원	입원기간(일)	통원기간(일)	지급(결정)보험금(원)
		2018.08.17 ~ 2018.08.17 0 일	18,890
		2018.08.28 ~ 2018.08.28 0 일	18,890
		2018.10.02 ~ 2018.10.02 1 일	9,600
		2018.10.04 ~ 2018.10.04 1 일	16,550
		2018.10.08 ~ 2018.10.08 1 일	16,550
		2018.10.10 ~ 2018.10.10 1 일	16,550
		2018.10.12 ~ 2018.10.12 1 일	16,550
		2018.10.15 ~ 2018.10.15 1 일	16,550
		2018.10.17 ~ 2018.10.17 1 일	16,550
		2018.08.17 ~ 2018.08.31 14 일	305,120
		2018.10.19 ~ 2018.10.19 1 일	16,550
		2018.10.21 ~ 2018.10.21 1 일	18,940
		2018.10.24 ~ 2018.10.24 1 일	16,550
		2018.10.26 ~ 2018.10.26 1 일	16,550
		2018.10.29 ~ 2018.10.29 1 일	16,550
		2018.10.31 ~ 2018.10.31 1 일	16,550
		2018.11.05 ~ 2018.11.05 1 일	16,550
		2018.11.08 ~ 2018.11.08 1 일	16,550
		2018.11.07 ~ 2018.11.07 1 일	90,460
		2018.11.12 ~ 2018.11.12 1 일	16,550

